

# 러시아 7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기술규정) 식품 포장 표시에 대한 기술규정 (TR TS 022/2011) 개정

- 출처: 유라시아 경제협의회 지시 N122 (2018.07.24.),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사회 결정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 전달을 위해 식품 포장 표시에 대한 기술규정의 일부를 개정함
- 개정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조항	항목	변경사항
제4.3절, 제1항	제품명이 정해진 경우 그 명칭을 품목명 옆에 표기해야함	추가
제4.8절, 제1항	기준: 식품 생산자의 소재는 관세동맹국 내 생산 혹은 제3국 생산과 관계없이 식품에 표시해야 함	소재를 이름과 소재로 수정
제4.12절, 제1항	쉽게 읽을 수 있음의 기준은 포장에 사용된 글꼴의 명료함과 가독성임으로 각 글꼴의 크기는 본 항의 4호와 5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또한 배경색과 글자색간의 대조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제외한 시력교정장치의 도움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명료함의 기준은 글이나 글그림형태의 식품에 대한 정보가 내포한 의미전달의 유일성임	추가
	제4.1절 제1항의 1, 3, 4호(생산일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사용된 글자를 제외)와 5호(유효기한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사용된 글자 제외)에서 규정한 정보는 글꼴의 높이가 2mm(소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됨	추가
	제4.1절 1항의 6, 7, 8호(이용의 제한사항이나 권고사항), 9호(특수 식품)에서 규정한 정보와 생산일, 유효기한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는 글꼴의 높이가 0.8mm(소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됨	추가
제4.12절, 제8항	기준: 생산과정에 이용되지 않은 물질, 식품구성성분이 아닌 물질, 식품에 표현되지 않은 맛과 향은 식품의 포장에 이미지의 형태로 표현되어서는 안 됨. 단, 본 절의 9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이미지를 이미지와 글로 수정
제4.12절, 제9항	기준: 조리를 통해 나타날 해당 식품의 모습을 이미지의 형태로 표시할 경우 '조리 예' 혹은 유사한 의미의 설명을 첨부해야함	이미지를 이미지와 글로 수정

-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의 정보를 어려움 없이 파악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것임
- 최근 '신호등 표시제'를 비롯하여 식료품 구매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 중임
- 변경되는 러시아 식품 포장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2. (수출현안)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에 대한 개별적인 특별경제조치 1년 연장 결정

- 출처: 러시아 정부 행정명령 N816 (2018.07.12.), 인테르팍스 기사, 파이낸셜뉴스 기사, 농업경제신문 기사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전보장을 위한 개별적인 특별경제조치를 1년 연장하는데 서명함
  - 러시아는 지난 2014년 8월 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제재 조치를 취했음
  - 이 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의 육류, 소시지,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유제품 등의 수입이 금지됨
  - 이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2015년 8월), 우크라이나(2016년 1월)를 제재 국가 목록에 추가하여 그 대상국을 확대해옴
-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계속적인 제재조치 시행과 연장으로 양국의 수출입 경향이 바뀜
  - 서방국가도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응징하기 위해 시작한 제재조치를 계속 연장해 오고 있음
  - 제재조치 직후 러시아 육류, 생선 수입의 약 60%, 유제품, 채소, 과일 수입의 50%가 사라지게 되어 큰 혼란을 겪음. 2013~2016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이 40% 감소하는 결과를 낳음
  - 2016년 11월 1일부터 수입금지 항목에 소금이 추가되었고, 2017년 5월 20일부터 의약품과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생산을 위한 소금 수입은 허가함. 2017년 10월 27일에는 번식용을 제외한 살아있는 돼지와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식용 설육이 수입제한 품목에 추가됨
  - 러시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26,000톤의 농산물을 폐기처리 함. 폐기 대상의 대부분은 폴란드 사과(24.9만 톤), 터키 토마토였음
  - 폴란드산 과일의 경우 러시아 수출을 위해 벨라루스를 거치며 원산지를 위조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음
- 제재조치에 따른 수입 변화는 러시아 국내 농수산업 발전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작용함
  - 러시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지속 중임. 여기에 외국인 투자도 가세하여 러시아 농수산물 국내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 러시아 농업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생산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중이라고 함. 특히 과일, 채소, 치즈, 우유, 육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특히 2014년 이후부터 온실 농업 설비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7월 23일 데이터에 따르면, 온실작물의 수확량은 2017년 대비 17.4% 상승한 60만 톤에 달함

- 제재조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루블화의 약세는 러시아 제품의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경쟁력을 높여오고 있음. 순수 밀 수입국이었던 러시아는 2005년~2006년의 밀 생산량 4,450만 톤에서 2017년~2018년 밀 생산량 8,500만 톤을 기록함. 수출 비중도 2001년 1%에서 2016년~2017년 18%로 급증함
- 또한 경제제재 조치 이전부터 시작된 국가 농업개발 프로그램(2008년~2012년)에 효과로 가금류 및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사료생산량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연간 1백만 톤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현재 50억 루블(8,500만 달러)을 투자하여 총 223억 루블(3억 7,600만 달러)로 77개의 사료생산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으로 밝힘
- 러시아의 농업 발전에 따라 한국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러시아는 노화된 생산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생산 단지 설립과 생산물 가공단지 설립에도 투자하고 있음
  -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와 지구 육지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장점을 가진 러시아의 농수산물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가공 인프라까지 갖춰지게 되면 한국 농수산물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농업 발전 추이에 유의하여 제품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 3. (검역) 동식물 검역 불합격 품목 및 사례

-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 C-A P-7/2626-7(2018.07.27.), N Φ C-A P-7/2627-7(2018.07.27.), N Φ C-A P-7/2618-7(2018.07.03.), N Φ C-A P-7/2624-7(2018.07.27.)
- 여름철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동식물 제품의 검역 불합격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
  - 동물검역에서는 오징어 가공품과 닭고기 품목의 위반사항이 대표적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국가	수출자명 혹은 번호	상품	위반사항
중국	N 3700/02B15 Yantai Youmei Food Co., Ltd	양식하지 않은, 후추와 참깨를 뿌려 말린 오징어	효모 및 곰팡이 검출
중국	N 2100/02856 Dalian Donglin Food Co., Ltd.	말린 오징어	수은 검출
페루	N P 234-SUL-POAD PRODUCTORA ANDINA DE CONGELADOS S.R.L.	절단한 대왕 오징어	대장균군 검출
브라질	N SIF 2 Rio Branco Alimentos S.A.	닭 (일부냉동), 피부 있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i>Listeria monocytogenes</i> ) 검출

- 수출입을 위해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는 페루산 오징어와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각각 검출됨

- 중국산 오징어에서도 효모, 곰팡이, 수은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됨
- 수산물의 경우 수입회사 목록에 등록된 회사에게 수입 허가가 떨어지므로 이러한 검역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수입회사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름철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함
- 복숭아, 친도복숭아, 메론, 수박 등 여름철 과일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특정 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7월 2일부터 22일간 검출되었다고 보고된 해충은 다음과 같음

검출항목	일자별 검출수			계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	
복숭아 순나방 ( <i>Grapholitha molesta</i> Busck.)	12		7	19
꽃노랑총채벌레 ( <i>Frankliniella occidentalis</i> Perg)	28		16	44
바구미 ( <i>Callosobruchus</i> spp)	5			5
지중해 과실파리 ( <i>Ceratitis capitata</i> (Wied.))	24	11	21	56
새삼속 ( <i>Cuscuta</i> spp.)		6	3	9
담배가루이 ( <i>Bemisia tabaci</i> Gen.)		3	8	11

- 가장 많이 검출된 해충은 지중해 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로 애벌레가 과일내부를 갉아먹어 과일을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떨어지게 함. 한국에서도 금지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어 칠레, 미국 플로리다주의 과일이 수입금지 된 사례가 있음
- 다음으로 많이 검출된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는 복숭아, 사과, 감귤, 수박, 참외, 오이, 고추 등 채소와 화훼류 등 모든 원예작물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과실의 표면을 코르크화 시키며 상품성을 훼손함
- 복숭아 순나방(*Grapholitha molesta* Busck.)의 경우 복숭아, 살구, 자두나무의 새순과 과실을 갉아먹어 해를 입힘
- 국내에서도 병해충으로서 지정된 품목들이므로 수출 과정에서 유의하여야함. 또한 해당 해충 방제 노하우를 갖춘 경우 과실의 수출뿐만 아니라 방제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음

##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HS CODE)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 상품코드 분류 해설서 변경

- 출처: 유라시아 경제협력회 권고 N12 (2018.07.24)

- 통합 상품코드 분류 해설서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정정함
  - 상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신 변경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02호(육과 식용 설육)에는 기존 단락을 다음으로 대체함
  - 해당 호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0511)을 포함하지 않으며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 펠릿 형태의 것(2301)도 제외함
- 1302호(식물성 수액과 및 식물추출물; 펙틴물질,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그 밖의 점질물과 증점제, 변성가공여부 상관없음)의 기존 단락을 다음으로 대체함
  - 제품의 명칭이 없거나 특정한 품목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성 수액(식물을 짜거나 절단하여 얻어진 것), 추출물(용매에 의해 식물에서 분리된 것)을 이 호에 포함함
  - 수액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 됨. 추출물은 액체, 페이스트 또는 고체 형태를 띰. 텡크쥬어(러.Настойки[나스토이키])는 추출된 그대로 알코올에 용해된 상태이며, 유동추출물은 추출물이 알코올·글리세롤이나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 상태임. 텡크쥬어(tinctures)와 유동추출물(fluid extracts)의 구분은 표준화되어 있음 (예: 제충국 추출물은 2%·20%나 25%의 표준 피레트린(pyrethrins)을 함유를 표준으로 하고 상품 등급을 받기위해 광유를 첨가함)
  - 고체의 추출물은 용제를 증발시켜 얻어지며, 때로는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거나 표준 배합물 준수를 불활성 물질을 첨가함, 이 경우, 추출물은 초기 용매추출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특정 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종류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추출 공정이나 정제 공정을 거치면 안 됨
  -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로 이용되나 이 물품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함. 또한 초기 추출 후 추가적인 추출공정이나 정제, 한외여과 또는 추가 추출 공정과 같은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경우도 제외함

- 1515호(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지방, 오일(호호바유 포함) 및 그 분획물(정제여부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의 기존 단락을 다음으로 대체함
  -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유의 지질의 대부분(약 80%)은 배아에 함유되어 있으며 생기름은 가공 산업(비누, 윤활물질의 생산과 가죽가공)에 이용되며, 정제유는 식품가공, 제빵, 다른 오일과의 혼합 등의 형태로 이용됨
- 1802호(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폐기물)의 기존 단락을 다음으로 대체함
  - 코코아 껍질을 제거한 후 얻어진 코코아 분말은 보통 이들의 지방 함유량은 추출에 있어 경제적인
- 1806호(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품)에 1806 20(기타 조제 식품(2kg을 초과하는 블록·슬래브·막대 모양인 것이나 용기 혹은 내용물에 직접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상태'인 것)) 항목을 추가함
  - '그 밖의 상태'는 알약, 알곡, 원형, 물방울, 풍선, 칩, 털뭉치, 강장, 얇게 채 썰린 형태 등이 모두 포함됨. 이 호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초콜릿 제품, 베이커리 제품, 제과,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이나 장식의 목적으로 이용됨
- 2009호(과실 주스(포도즙 포함), 채소 주스(미발효, 주정 미함유,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첨가여부 상관없음)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 채소주스와 과실주스에 대한 기존 설명에 '코코넛 즙을 포함'을 추가

## III 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첨부파일 참조